

		보도설명자료	(배포) 2019. 10. 10(목)
즉시 사용			
비고	#공동배포 : 농림축산식품부		
담당	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	과장 임택진, 사무관 정성진 (044-200-2630, 2634)	
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	과장 박홍식, 사무관 남기현 (044-201-2351, 2352)	

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“사업허가 의문투성이...특혜 의혹” 제하 보도(2019.10.10. 목, 문화일보)에 대한 정부 입장

1. 보도내용

- ☐ 국내 최대 안면도 태양광발전사업 “사업허가 의문투성이...특혜 의혹” 제하 보도에서
- 농림축산식품부와 태안군도 당초 사업 부지가 태양광발전 사업에 적절하지 않은 초지와 염전 등이라는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, 국무조정실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이 바뀌었음
 - S사는 2018년 7월 24일 국무조정실 규제신문고에 초지전용을 건의했고, 국무조정실의 이첩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1일 초지전용 건의를 불수용하겠다고 통보함. 그러나 9월 3일 국무조정실의 사업부지 방문 후 중요산업시설 범위를 “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”으로 확대 해석함

2. 설명내용

- ☐ 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가 당초 안면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부정적이었으나, 국무조정실(이하 국조실)의 현장방문 이후 입장을 바꾸어 중요산업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석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
- 농식품부는 2018년 7월 24일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초지법 제2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“중요 산업시설”에 포함해 달라고 민원인이 국조실 규제신문고를 통해 건의한 규제개선 건에 대하여

- 8월 31일, “중요 산업시설”은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, 해당 시설이 “중요 산업시설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치 주체 및 목적, 공익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하였고,
 - 초지전용대상 중에는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라 “그 밖에 시장·군수가 시·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”도 있으며, 전용허가 가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게 된다고 답변함
 - 이후, 국조실은 9월 6일 농식품부의 8월 31일 답변 중 “중요 산업시설 내 기간산업시설”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고, 초지법 제23조 제1항제9호에 대한 해석이 ‘17년 3월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유권해석과 상이하여,
 -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통해 일선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농식품부에 재차 설명을 요청하였음
 - 이에 농식품부는 10월 23일, “중요 산업시설” 중 “기간산업시설”의 범위에 대하여 “행정청의 사업계획 승인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”으로 구체화하고, 건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“지자체장이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”이라고 분명히 함
 - 초지법 제23조제1항제9호에 대하여도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국 단위에 집행지침으로 시달,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답변함
- ☐ 이번 규제신문고 건의 처리는 농식품부의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한 것임
- 참고로,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권한은 지자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에게 있음